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576

발의연월일: 2021. 1. 22.

발 의 자:김성주·강선우·고영인

김회재 · 남인순 · 송영길

송옥주·정필모·최종윤

허종식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긴급지원은 일시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신속하게 보호하려는 제도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등을 긴급지원대상자 뿐 아니라 친족, 관계인까지 광범위하게 정하고, 긴급지원 요청 방법도 구술, 서면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음.

위기가구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 상자가 자주 이용하는 의료기관, 복지관 등에서도 긴급지원을 안내하 고 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민간법인·단체·시설·기관에서도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긴 급복지 신청서 작성, 제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의 접근성 을 높이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서 긴급지원 요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안 제7조제4항)

법률 제 호

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제4항에"를 "제5항에"로 한다.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한 법인·단체·시설·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있다.

부 칙

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지원요청 및 신고) ① ~	제7조(지원요청 및 신고) ① ~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지정
	한 법인・단체・시설・기관 등
	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
	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
	지원할 수 있다.
<u>④</u> (생 략)	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⑤ 제4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,	<u>⑥</u> 제5항에
시간, 방법, 그 밖에 필요한 사	
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	
<u>⑥</u> (생 략)	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